

第30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11年6月23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5.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腦研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5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아동빈곤법안
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2.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73.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
74.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5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태원 · 임동규 · 안효대 · 김소남 · 윤상일 · 권선택 · 이인기 · 임영호 · 김창수 · 김용구 의원 발의) 7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10. 대한민국 제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윤석용 · 유기준 · 이한성 · 신상진 · 김정훈 · 임영호 · 이인기 · 손범규 · 전혜숙 · 고흥길 · 이석현 의원 발의) 8
1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8
1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
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7.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박근혜 · 권경석 · 김성조 · 김소남 · 김태원 · 원유철 · 이범래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 정수성 · 최인기 의원 발의) 12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나성린 · 이인기 · 김금래 · 박민식 · 구본철 · 안상수 · 홍일표 · 강석호 · 유성엽 · 현기환 의원 발의) 13
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이화수 · 윤영 · 송훈석 · 안형환 · 김세연 · 김영우 · 조진형 · 김금래 · 김우남 의원 발의) 13
2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5.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6.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 · 허원제 · 박보환 · 김세연 · 권영진 · 전혜숙 · 김소남 · 서상기 · 안효대 · 유성엽 · 임해규 · 이군현 · 배은희 의원 발의) 13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원희룡 · 박준선 · 이한성 · 김세연 · 정갑윤 · 현기환 · 전현희 · 유재중 · 박대해 의원 발의) 13
29. 腦研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기준 · 김선동 · 임해규 · 권영진 · 유정현 · 이종혁 · 장제원 · 황영철 · 김성태 의원 발의) 13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3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3
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3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3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이종혁 · 정병국 · 원희목 · 한선교 · 김성태 · 유재중 · 현기환 · 박영아 · 성윤환 · 강승규 의원 발의)	16
39.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 · 김세연 · 이화수 · 안형환 · 이사철 · 손범규 · 주성영 · 유성엽 · 김소남 · 김효석 · 유재중 · 이정현 · 여상규 · 서상기 · 이종구 · 강명순 · 임영호 · 정양석 · 강석호 · 한기호 · 정희수 · 홍준표 · 정범구 · 전해숙 · 황영철 · 이춘식 · 김기현 · 이성현 · 신상진 · 홍영표 · 유정현 · 김영우 · 안홍준 · 김성수 · 이한성 · 신성범 · 권영진 · 김호연 · 구상찬 · 정갑윤 · 김우남 · 이철우 · 박대해 · 장윤석 의원 발의)	18
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8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8
43.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8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조진래 · 이혜훈 · 황진하 · 김태환 · 장제원 · 서상기 · 손숙미 · 이해봉 · 이한성 · 이인기 · 유성엽 · 김옥이 · 심재철 의원 발의)	18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 · 정갑윤 · 정희수 · 강기갑 · 유성엽 · 김세연 · 안형환 · 이철우 · 이춘식 · 김우남 · 신영수 · 정범구 · 임동규 · 이성현 · 황영철 · 이화수 · 김소남 · 정영희 · 박준선 · 박순자 · 김성수 · 강석호 · 신성범 · 조진래 · 박대해 · 구상찬 · 원유철 의원 발의)	18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전현희 · 백재현 · 이낙연 · 김성곤 · 김영록 · 문학진 · 김우남 · 이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18
4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50.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원유철 · 김영우 · 이화수 · 한선교 · 김성희 · 신상진 · 황진하 · 박준선 · 임해규 · 김학용 · 유정현 · 조진래 · 정해결 · 김선동 · 박보환 · 유정복 · 김태원 · 김소남 · 여상규 · 손범규 · 정갑윤 의원 발의)	20
5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류근찬 · 김창수 · 임영호 · 이은재 · 심대평 · 권선택 · 김충환 · 김용구 · 정의화 의원 발의)	20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기갑 · 김우남 · 박은수 · 송영길 · 안민석 · 양승조 · 오제세 · 우윤근 · 유성엽 · 유원일 · 이용섭 · 이찬열 · 이한성 · 정병국 · 조배숙 · 조승수 · 조영택 · 최문순 · 최영희 · 홍영표 의원 발의)	20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성수 · 장윤석 · 안민석 · 조배숙 · 신건 · 강기갑 · 강창일 ·곽정숙 · 김영진 의원 발의)	21
5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유선호 · 김우남 · 김영록 · 신낙균 · 김유정 · 김성곤 · 송훈석 · 오제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21
5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5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 · 김창수 · 김정권 · 김정 · 이찬열 · 류근찬 · 이재선 · 김낙성 · 권선택 · 이명수 · 정영희 의원 발의)	21
5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5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6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62.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4

6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4

6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8. 아동빈곤법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강길부·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고승덕·고홍길·권성동·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희·김세연·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김충환·김태원·김학용·김효재·나경원·나성린·박민식·박상은·박준선·배영식·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재중·유정복·유정현·윤석용·윤영·이경제·이두아·이명규·이명수·이범래·이사철·이성현·이은재·이정선·이종혁·이주영·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정진섭·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진성호·진수희·진영·차명진·한선교·허원제·허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 26

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김재균·김창수·최철국·주승용·이시중·이미경·이용삼·박선숙·김종률 의원 발의) 26

70.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7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72.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전혜숙·손숙미·유정현·김호연·김성태·홍영표·임해규·황영철·장윤석·이영애·최경희·이인기·고홍길·권영진 의원 발의) 28

73.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8

74.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선영·강성천·권선택·김낙성·김소남·김용구·류근찬·변웅전·신상진·신영수·이용희·이진삼·임영호·최재성·황진하 의원 발의) 2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29

o 5분자유발언 29

(14시2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희태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여야 의원 288인으로부터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의 규

정에 따라서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23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전자단기사채등

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현 의원 나오셔서 이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성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여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현행 기업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기사채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 필요성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최근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감안하여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한·EU FTA가 체결되어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부를 협정 체결국에 개방하여야 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외국 공인회계사와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 공인회계사와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둘째,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를 자격취득국의 회계법이나 기준 등에 대한 자문으로 한정하며,

셋째,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와 1인당 출자한도를 일정 비율 미만

으로 제한하되 출자는 한·EU FTA 협정의 발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된 장기 신용은행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의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52조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운동 정신의 승화를 위하여 광복회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광복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라서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은 특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만 해 주시면 바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날낱이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태원 · 임동규 · 안효대 · 김소남 · 윤상일 · 권선택 · 이인기 · 임영호 · 김창수 · 김용구 의원 발의)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33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위 5건에 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길부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강길부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연간 기준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 양허한 관세율을 초과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EU FTA 협정에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세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국내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동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최근 개정된 대로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태근 의원과 이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체는 정부의 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이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체는 정부에 대한 배당 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만장일치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 1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윤석용·유기준·이한성·신상진·김정훈·임영호·이인기·손범규·전혜숙·고홍길·이석현 의원 발의)
 - 1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14시41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유기준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공관의 설치 및 변경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체계·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진 의원, 이찬열 의원, 신낙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의료구호 등을 추가하여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재형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6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2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정미경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국방위원회 수원 권선구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정미경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첨단무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진정한 애국심과 정신력입니다.

북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강한 군대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이 높습니다. 해병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현재 이 시점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는 최상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해병대에게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든든함을 드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느끼도록 해 주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먼저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살려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군의 임무조항에 해군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는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단순히 합동참모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재임 중 해병대에서 최고의 서열을 갖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 중 해병대 장교 임용추천권 및 부사관 임용권, 사단장 등 주요 부서장 추천권,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핵심권한을 해병대의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의 관리 전환, 부령 결정, 대여·양도 및 교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군인공제회에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보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이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퇴직금

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일부 표현에 불명확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 기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35조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조문 표현에서 ‘준용’을 ‘적용’으로 바꾸는 등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장 제출)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박근혜·권경석·김성조·김소남·김태원·원유철·이범래·이인기·장제원·정갑윤·정수성·최인기 의원 발의)

(15시02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태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하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가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소
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나성린·이인기·김금래·
박민식·구본철·안상수·홍일표·강석호·
유성엽·현기환 의원 발의)**

**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화수·
윤영·송훈석·안형환·김세연·김영우·
조진형·김금래·김우남 의원 발의)**

**2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박영아·허원제·박보환·김세연·권영진·
전혜숙·김소남·서상기·안효대·유성엽·
임해규·이군현·배은희 의원 발의)**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원희룡·박준선·이한성·김세연·정갑윤·
현기환·전현희·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

29. 腦研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선동·임해규·
권영진·유정현·이종혁·장제원·황영철·
김성태 의원 발의)**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
기술위원장 제출)**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과학기술위원장 제출)**

**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
기술위원장 제출)**

(15시07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
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24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
항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27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연구실 안전환
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3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32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33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科學技術委員長代理 **金世淵** 존경하는 홍
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연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
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이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의결 요구 시효를 연장하
려는 것으로서, 국공립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 시
효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일반 징계사유는 현행대
로 2년,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의 사유는 5년으
로 연장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장관의 명칭
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가 학술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노력의무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의 지급 중지 및 환수와 관련하여 사업비 임의적

지급 중지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안으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뇌연구촉진심의회를 폐지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칙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학년도 시작 일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여 이를 조교수에 포함하고 기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병휴직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연구촉진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종전에 뇌연구촉진심의회에서 수행하던 뇌연구 관련 사항을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로 기능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부의장 **홍재형**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97인, 기권 6인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4인, 기권 7인으로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이종혁·정병국·원희복·한선교·김성태·유재중·현기환·박영아·성윤환·강승규 의원 발의)

(15시24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3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성동**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한·EU FTA 협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이용 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더하여 접근 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공무상 행위 등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의 예외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갑원 의원, 송훈석 의원, 임동규 의원, 원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인정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은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등 2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두도록 하고, 둘째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

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혜걸 의원, 안효대 의원, 한선교 의원, 김효재 의원, 허원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분쟁 조정의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방송을 실시토록 의무화되고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거부 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등 공정경쟁 저해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법(대안)에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방송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1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김세연·이화수·안형환·이사철·손범규·주성영·유성엽·김소남·김효석·유재중·이정현·여상규·서상기·이종구·강명순·임영호·정양석·강석호·한기호·정희수·홍준표·정범구·전혜숙·황영철·이춘식·김기현·이성현·신상진·홍영표·유정현·김영우·안홍준·김성수·이한성·신성범·권영진·김호연·구상찬·정갑윤·김우남·이철우·박대해·장윤석 의원 발의)

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물위원회 제출)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물위원회 제출)

43.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물위원회 제출)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 발의)(조진래·이혜훈·황진하·김태환·장제원·서상기·손숙미·이해봉·이한성·이인기·유성엽·김옥이·심재철 의원 발의)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정갑윤·정희수·강기갑·유성엽·김세연·안형환·이철우·이춘식·김우남·신영수·정범구·임동규·이성현·황영철·이화수·김소남·정영희·박준선·박순자·김성수·강석호·신성범·조진래·박대해·구상찬·원유철 의원 발의)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전현희·백재현·이낙연·김성곤·김영록·문학진·김우남·이용희·오제세 의원 발의)

4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6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39항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2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물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해결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물위원장대리 **정해결**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물위원회 균위·의성·청송의 정해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김치의 품질향상과 제조기술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세계 김치연구소의 설립, 경영개선 지원,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시장 개척, 유통센터 지원 등 김치재료의 수급 안정화와 김치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일부 규정을 본 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요곡물에 대한 국제곡물관측의 실시근거를 신설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품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면서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제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수출검역의 실시 근거와 검역업무의 수행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도입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사고, 입출항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되,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작물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되,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영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 장소에 국한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법령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정해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농
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식
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어
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산
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림수산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청
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사
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

의)(김성수·원유철·김영우·이화수·한선교·
김성희·신상진·황진하·박준선·임해규·
김학용·유정현·조진래·정해걸·김선동·
박보환·유정복·김태원·김소남·여상규·
손범규·정갑윤 의원 발의)

5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류근찬·김창수·임영호·
이은재·심대평·권선택·김충환·김용구·
정의화 의원 발의)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강기갑·김우남·
박은수·송영길·안민석·양승조·오제세·
우윤근·유성엽·유원일·이용섭·이찬열·
이한성·정병국·조배숙·조승수·조영택·
최문순·최영희·홍영표 의원 발의)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장윤석·안민석·조배숙·신건·강기갑·강창일·곽정숙·김영진 의원 발의)

5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유선호·김우남·김영록·신낙균·김유정·김성곤·송훈석·오제세·최규성·추미애 의원 발의)

5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5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김창수·김정권·김정·이찬열·류근찬·이재선·김낙성·권선택·이명수·정영희 의원 발의)

5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5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6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62.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5시54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50항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안, 의사일정 제5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식생활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정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정범구**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안은 해외 농·축산물과 임산물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개발도상국과의 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규정 중 지적법에 관한 사항을 법제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도우미 사업을 여성어업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정의에 농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품종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이상수온에 의한 피해를 포함시켜 재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수산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수농수산물인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환급 특례기간을 3년 연장 하였습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지정검역 대상으로 냉동·냉장 수산동물의 제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정범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농
 립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 기권 7인
 으로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종자산업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농
 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농
 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식
 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9인
 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6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6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0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3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부산 사하을 민주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정권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은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이것을 1000m 즉 1km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법은 지식경제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부디 저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조경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유통법 개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유통법을 대폭 개정한다 한들 한·EU FTA로 인해 500만 중소 유통상인들에 대한 유일한 보호막은 결국은 사라지고 말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나면 애써 1km로 확대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기업형 슈퍼 조정제도가 한·EU FTA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번 유통법 개정이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중소 유통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길은 한·EU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문 중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의 도매서비스, 소매, 프랜차이즈 편에서 '제한 없음'으로 명시한 것을 수정하여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장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정문 수정은 지난 5월 2일 여·야·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문 2항에서 정부는 한·EU FTA 발효 후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 측과 협상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EU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협정문 수정이 시일이 걸린다면 급한 대로 임시방편이 있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올 7월 1

일 잠정발효에서 충돌 조항을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관련 조항을 제외해 달라는 유통상인들의 절규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잠정발효 제외는 한·EU FTA 협정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5.10조제5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협정문 중 잠정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을 경우 동 규정을 잠정발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EU의 동의를 얻어 잠정발효에서 SSM 규제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U는 이미 지재권 행사 집행과 문화협력 분야의 일부 조항을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통법과 상생법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매우 귀중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협상 과정에서 이를 협정문에서 반드시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중소기업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의지를 보여 협정문 수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500만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대기업의 횡포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재래시장 우리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한·EU FTA로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박탈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SSM 규제법 충돌 조항을 제외하고, 나아가 한·EU FTA 협정문 수정으로 유통법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일정 정도나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표결에는 찬성을 해 주시되 앞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현 의원?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4인, 기권 4인
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4인
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아동빈곤법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

- 강길부·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
- 고승덕·고홍길·권성동·권영세·권영진·
- 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
- 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희·김세연·
- 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
- 김충환·김태원·김학용·김효재·나경원·
- 나성린·박민식·박상은·박준선·배영식·
- 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
- 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
- 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재중·
- 유정복·유정현·윤석용·윤영·이경재·
- 이두아·이명규·이명수·이범래·이사철·
- 이성현·이은재·이정선·이종혁·이주영·
- 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구·
- 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
- 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
- 정진섭·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
- 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
- 진성호·진수희·진영·차명진·한선교·
- 허원제·허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
- 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

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김재균·
- 김창수·최철국·주승용·이시중·이미경·
- 이용삼·박선숙·김종률 의원 발의)

(16시2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8항 아동빈곤법
안, 의사일정 제6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명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입니다.

아동빈곤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빈곤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으로서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
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만에 수
립하며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빈곤아동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특별법이 이미 14개나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 상황에서 얼
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아이를 죽여서 버리고 또
바로 며칠 전에도 온 가족이 동반자살을 했습니
다. 이렇게 빈곤 상황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과 고통 받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빈곤법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62년 만에, 18대 국회 회기 중 가
장 역사적인 일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
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
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빈곤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빈곤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시2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0항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범관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전환경성검토'의 명칭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였

습니다.

둘째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앞서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고 그 초안을 거친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의 사업장에 2개 분야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 번째, 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과 연계해서 사전환경성평가검토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이 법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범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 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전혜숙·손숙미·유정현·김호연·김성태·홍영표·임해규·황영철·장윤석·이영애·최경희·이인기·고홍길·권영진 의원 발의)

(16시3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2항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은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스페셜올림픽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회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의 결산보고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은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74.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선영·강성천·권선택·김낙성·김소남·김용구·류근찬·변웅전·신상진·신영수·이용희·이진삼·임영호·최재성·황진하 의원 발의)

(16시3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3항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 의사일정 제74항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박선영**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 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사할린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인에 의해서 자행된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및 피해 배상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일본의 비인도적인 사할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의안의 제명을 ‘국제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입법 처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9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6시40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발언이 있습니다.

안 바쁘신 의원님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과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두 가지 말씀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베풀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서비스 세계 1위의 공항입니다. 2006년부터 국제적으로 연속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경쟁 공항이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을 이미 제쳤습니다. 여객환승률은 18%로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되고 있고, 환물환적률은 50%로 세계 2위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익률이 높은 알짜 공기업입니다.

3단계 확장공사 재원이 없어서 판다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비 4조 원 중에 이미 2조 2000억 원을 수익으로 확보해 났습니다. 2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체수익으로 3차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3단계 확장하고 주변 개발 완성될수록 하늘 모르고 그 가치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국보급 인천공항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알짜 공기업업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것이란 말입니까?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잦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들은 왜 입을 뽕뽕 닫고 있습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한 7명 당권 주자들, 왜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치 대한제국 말기의 매국노와 같은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요충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기간시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태풍까지 온다고 합니다. 4대강은 무사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 와중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첫째,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지원에만 앞장섰던 한국수자원학회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착공한 법률적 문제 있다,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 때문에 오히려 홍수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 수자원공사의 16개 보, 8조 사업은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까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장섰던 전문가들이 발뺌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어제 국토위에서 개최한 친수법 폐지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측의 진술인 박해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공이 국가를 대신하여 8조 원을 투입해서 국가 하천공사를 수행했는데 수공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작년 연말에 친수법을 날치기 처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데 날이 밝혀준 겁니다.

알토란같은 국보, 황금알 낳는 거위인 국보인 인천공항은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오히려 수자원 보전에 애써야 될 수자원공사는 8조 빛내서 4대강 사업 공사하고 이제 그 빛 갚게 해주겠다고 4대강 주변 개발에 특혜를 주려는 겁니까?

국가가 개인입니까? 국가가 탐욕스러운 기업입니까? 왜 국가가 나서서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노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법, 그리고 4대강 주변 개발 촉진을 하려고 하는 친수법은 악법입니다. 당장 폐기되어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6·25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1년이 되었지만 국군포로도 전시납북자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초에는 오백여 분에 달하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계셨습니까라는 이제는 40% 이상이 다 돌아가시고 겨우 삼백여 분 정도만 남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 많은 세상을 등지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단 한 분도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여든한 분이 지친 몸으로 자진 탈북해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연락한 국군포로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국내에 아들이나 동생이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군번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몇몇 분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계신 분을, 대한민국이 그들을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이분들을 전사자 처리를 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신 분들까지도 아직도 전사자 처리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납북자들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켜 놓고 불과 석 달 동안에 공무원과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학자, 예술가, 의료인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신생 독립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들이면 족집게로 콕 집어서 모두 끌고 갔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만 명입니다. 철사 줄에 팽팡 묶여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며 가족들과 헤어져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전후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를 북한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고 의제로 삼아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어린 나이에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소년병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자유선진당이 6·25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올려서 월 12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단돈 5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정부가 정부 돈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게 일부를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장에 뛰어들었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지자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그리고 참전용사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소년병 등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747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그리고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야심 찬 공약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일자리 창출은 커녕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였던 일자리조차 빼앗아 가는 재벌들의 횡포를 목인하는 이 정부를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처리를 위한 6개월간의 투쟁과 170일에 이르는 김진숙 위원의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 중이고 대규모 용역 투입에 따른 폭력사태, 시시각각 조여 오는 공권력 투입 위협에 불안과 걱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한진중공업 문제는 단위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할 권리, 생존할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리해고자 및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전체회의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2일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던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은 돌연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다음 주 29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사태는 조남호 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힘들게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는 6개월이 넘는 장기과업, 168일이 넘는 김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으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며 무시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재벌대기업들이 얼마나 반노동·반국회·반국민 정서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무분별, 부적절,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남발하면서 이번 국회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경제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청문회 개최의 방해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라도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재벌기업은 결코 그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성장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성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특정 몇몇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재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재벌총수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권적 발상이고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발언과 이들 단체의 행태를 보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지키는데 급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방관하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29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반드시 고발하고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정리해고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이 개정안은 외국의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례를 주려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의료비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는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대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의료비가 최대 4조 3000억 까지 많아질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의원발의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제주특별법에 있던 각종 영리병원 추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환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나 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의료법과 저촉되

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원격지 의사가 원격진료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 조항이나 외국의 평가인증을 받으면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영리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리화의 물결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은 무너지고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으로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개정안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허용하는 계약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제과학벨트 이것의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전시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과학강국으로 만들어 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원인은 향후 예산투입계획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정

부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과학벨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선언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은 차질을 빚었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민간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전세 수요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또 하나의 폐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거환경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중단 상태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물한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하루하루 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작년에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눈앞에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21개 구역의 초기투자비 2조 8000억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는 수도권에 집중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비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사회문제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장이라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 소재 한 명문사립대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 중 놓여준 학생 특별전형에 전국의 읍·면 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

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특목고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농어촌 학생들이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학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先東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7년에 반환되었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 및 지하수 조사에서 심각한 오염이 드러났습니다.

2009년~2010년 진행한 캠프 시어즈 등 경기도 소재 16개 미군기지 주변에서 토양조사한 결과 15개 기지에서 20t 덤프트럭 5351대 분량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16개 기지 중에서 무려 10개의 기지에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이른바 TPH, 또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납, 이와 같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최고 환경기준 64배를 초월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체 조사,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가져온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치명적 독극물인 고엽제의 매립범죄 의혹이 있는 캠프 캐럴에서의 한미 합동조사의

기만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수로 내려갈 때 다이옥신이 같이 따라 내려가지 않고 토양에 걸러지게 됩니다. 토양에 흡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하수에서 미량이라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면 바로 지하수 위 토양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조사에서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하천수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표면에 있는 다이옥신은 광분해 때문에 반감기가 1,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2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천수에서 미량이나마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이 심각하게 여전히 지금도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캠프 캐럴의 매립 의혹이 있는 그 장소의, 이른바 헬기장 또는 D구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토양조사를 실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표 투과 레이더니 이렇게 해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을 파 보면 됩니다. 땅을 파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이 땅을 파는 데 그곳 주민인 칠곡 왜관의 주민 대표와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환경전문가들을 참가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고엽제매립범죄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대손손 물려가야 할 조국 강토의 오염을 막아내고 반인간적인, 반생명적인 환경범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에 이러한 범죄가 밝혀지고, 이 환경을 복원하고 회복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잘못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 문제를 다루게 될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야·정협

의체는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검증하고, 또 심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제출자인 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적 원리를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정협의체는 위헌적 발상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의화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는 수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무려 296개라는 기록적인 오류를 수정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 내용조차 우리 국회에는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굴욕적인 원협상에 치명적인 재협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이 한미 FTA를 정부는 조속히 비준하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외통위 위원들과 만찬에 나서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것은 지난 3년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한미 FTA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ISD, 래칫(ratchet) 등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대규모 농업 피해와 노동자·서민들의 피해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FTA가 최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로 인해 대규모 농업 개방으로 이미 우리 농업은 피해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목전까지 다가온 현실에서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을 보장할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누구나 알다시피 국내 농업에 치명타로 작동할 것입니다.

WTO에서조차 보장받았던 농·축·수산물 관세는 한미 FTA로 10년에서 15년 안에 모조리 철폐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또한 124개 품목에서 그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관세 철폐도 모자라 주요 11개 품목에서는 기존 수입량보다 훨씬 많은 TRQ 물량을 배정하여 관세 철폐와 유사한 특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는 200만 명의 농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영세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농업을 희생해서라도 얻겠다던 한미 FTA의 막대한 경제효과는 커다란 문제 제기에 직면하여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민간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연간 5조 2000억 원이라는 세수이익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GDP 5.97% 증가라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오히려 세수는 연간 9315억 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생산성 증대효과를 제외하면 연간 세수는 마이너스 2조 1320억 원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계한 경제효과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경제효과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다 하였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FTA를 또다시 한·EU FTA 때처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한 채 여·야·정 협의로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 예속국으로 몰아넣어져서는 안 됩니다. 입법·사법·행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며 우리 국민을 양극화의 절곡으로 몰아넣을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의원

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정옥임 최경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8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전여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이군현	이낙연	이명수	이범관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한기호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홍일표	황진하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반대 의원(5인)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강기갑	곽정숙	유원일	조승수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홍희덕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기권 의원(2인)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유성엽	이상민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재경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창수
 김진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경제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기권 의원(1인)

박선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근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영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상현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이군현 이범관
 이명규 이명수 이상권 이윤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인기
 이성현 이재선 이종구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임동규 전여옥
 정두연 정양석 정장선 정해결
 조승수 조진형 조승용 주명진
 최규식 추미애 허천하 황진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유원일 조승수

기권 의원(2인)

김영록 정하균

(강석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2인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정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유원일 조승수

기권 의원(4인)

권선택 유성엽 이경재 이상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김동철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변재일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김을동	김재경	김정	김정권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윤영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백성운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전재희	정갑윤	정미경	정세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홍희덕	황진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기권 의원(1인)

전현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진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진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용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해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강명순 강성천 이인기 조영택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유 선 호	유 성 업	유 일 호	유 재 중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윤 영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김 호 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윤 석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주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이 종 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회 창	임 동 규	신 낙 균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신 대 평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미 경	안 민 석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양 승 조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원 회 목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유 일 호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업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윤 상 일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이 군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경 재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이 범 관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명 수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이 상 권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이 성 현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남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이 재 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이 중 구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이 춘 석	이 중 혁	이 진 복	이 진 삼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진 하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학 재	이 한 구
기권 의원(2인)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이 화 수
이 화 수	정 범 구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장 광 근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미 경	전 현 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범 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옥 임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정 태 근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경 태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주 승 용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경 환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규 식
				최 종 원	추 미 애	한 선 교	최 인 기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허 원 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사 덕
				황 진 하			홍 희 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영진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경제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정수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7인, 찬성 의원 207인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현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입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 성 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구 상 찬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 선 동 김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희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중 표 성 윤 환 손 학 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현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영 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신 건 이 상 민 현 기 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장광근	장병완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길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최경환

기권 의원(4인)

김동성 이사철 이성현 임영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

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영	김옥이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이경제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영호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장광근	장병완	전병헌	전여옥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순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윤석용	윤영	이경제	이낙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이상민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황우여	황진하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기권 의원(4인)

김용구	김진표	오제세	최규식
-----	-----	-----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的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순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경제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6인)			
김상희	김영선	김용구	김재균
박근혜	이은재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조진형	최경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김해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백성운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수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김해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윤석용	윤영	이경제	이낙연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이상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백성운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전병현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윤영	이경제	이낙연	이두아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이상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전병현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주승용 주호영 주성호 주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이사철 차명진 최경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명수

(정갑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3인, 찬성 의원 192인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태	김우남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오제세	원유철	유기준	유선호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박기춘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응진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신건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조문환	조순형	조진형	주광덕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학재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기권 의원(1인)

조원진

(유성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5인, 기권 의원 1인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기권 의원(3인)

김용구 박근혜 정하균

(박선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3인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나성린 이미경 정범구
(정수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5인, 기권 의원 3인임)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회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회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옥 임
 정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 영 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회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회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옥 임 정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성 호
 진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인 기 최 구 식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최 병 국
 허 천 홍 영 표 최 재 성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진 하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홍 희 덕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성 윤 환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이 해 봉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성 업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현	전 여 옥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 연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애 주	이 영 애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황 진 하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腦研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 기
김 금 래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기권 의원(7인)

김 기 현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유 선 호	이 성 남	조 전 혁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성순 문학진 신낙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결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혜 훈

기권 의원(3인)

김 정 권 류 근 찬 정 욱 임

(조경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4인, 기권 의원 3인임)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욱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권 성 동 노 철 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욱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金先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욱 이

김용구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학용 김희철 문학진 박병석 박순자 박주선 배은희 서병수 송광호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효대 원유철 유성엽 유정현 이낙연 이미경 이사철 이영애 이윤석 이정선 이진복 이한구 임동규 장세환 정갑윤 정옥임 정태근 조경태 조윤선 주광덕 최경환 최규식 최인기 한선교 홍영표 홍희덕

김태경 김재정 김정훈 김태원 김형오 나성린 박근혜 박보환 박영선 박준선 백성운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대평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일호 윤상일 이두아 이범관 이상권 이윤경 이은재 이정현 이진삼 이한성 임영호 전병헌 정미경 정의화 정하균 조문환 진성호 최경희 최병국 최재성 허원제 홍일표 황영철

남준 김재균 김춘진 김태환 김혜성 노철래 박기춘 박선숙 박영아 박지원 박지원 우종표 송훈석 신성범 심재철 안상수 여상규 유기준 유재중 윤석용 이명규 이범래 이성남 이인기 이종구 이춘석 이혜봉 장광근 전재희 정영희 정진섭 정희수 조원진 차명진 최규성 최영희 한기호 현기환 홍정욱 황우여

김을동 김정 김충조 김학송 김효석 류근찬 박대해 박선영 박종근 배영식 변재일 성윤환 신건수 안경률 안홍준 오제세 유선호 이정복 이경재 이명수 이병석 이애주 이용희 이재오 이주영 이학재 이혜훈 장광근 전재희 정영희 정진섭 정희수 조원진 차명진 최규성 최영희 한기호 현기환 홍정욱 황진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수 심재철 신성범
 신학용 안상수 안홍준 안경률
 안민석 여상규 오제세 원희목
 양승조 유기준 유선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병석 이애주 이영희
 이상권 이상득 이상권 이상득
 이영애 이윤경 이은재 이인기
 이종구 이춘석 이혜훈 임동규
 이진삼 이한성 이영호 장광근
 임영호 전병헌 정미경 정의화
 정하균 조문환 진성호 최경희
 최병국 최재성 허원제 홍일표
 황영철

기권 의원(2인)

김상희 박상은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황 영 철

반대 의원(4인)

강 기 갑 광 정 숙 金先東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유 성 엽 이 용 경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욱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이 인 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욱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름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낙 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욱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부겸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서병수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이한성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안상수	안홍준	안경률	안민석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양승조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원희목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유재중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학재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황진하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김영선
홍희덕			

기권 의원(7인)

김낙성	김성곤	김성순	심재철
정옥임	정하균	주승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김기현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성순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세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영우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우남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정권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충환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학용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김희철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근혜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병석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선영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박종근	백성운	백원우	서병수
배은희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서상기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송광호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신상진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광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7인)
 김금래 김동성 김동철 백재현
 신건 유성엽 정영희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정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광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7인)
 강성천 김상희 유성엽 이성남
 이인기 정범구 추미애
 (강창일·이낙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광정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6인, 찬성 의원 195인, 반대 의원 4인,
 기권 의원 7인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서상기 서종표 서윤환 손범규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상득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백재현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용경 이인기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종구 이주영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춘석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이진복 이진삼 이철투 이혜훈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광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임동규 임영호 전여옥 전재희 이정복 이정현 이두아 이명규
 장세환 장윤석 정범구 정수성 정장선 정해결 정영택 정희훈
 전혜숙 정갑윤 정의화 정성호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주영
 정영희 정옥임 정하균 조영식 이재오 이정현 이철우 이춘석
 정진섭 정태근 조순형 조정식 이진삼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정식 이진삼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성호 이재오 이정현 이철우 이춘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이진복 이진삼 이한구 장광근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연희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전혜숙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추미애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현기환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홍정욱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진영 차명진 주광덕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홍정욱 황영철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최규식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서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이정현 이두아 이명규
 이낙연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미경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사철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성현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주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춘석
 이진복 이진삼 이철투 이혜훈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광근
 임동규 임영호 전여옥 전재희
 장세환 장윤석 정범구 정수성
 정갑윤 정영희 정장선 정해결
 정옥임 정의화 정성호 정영택
 정진섭 정태근 조영식 조정식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성호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연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홍정욱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광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2인)

박선영 정희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욱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조경태 조원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백원우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종표	성윤환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송훈석	손범규	손학규
신성범	신영수	신낙균	신상진
심재철	안경률	신학용	심대평
안상수	안형환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여상규	안홍준	안효대
유기준	유성엽	우윤근	원유철
유정현	윤석용	유일호	유정복
이명규	이명수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윤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진여옥 진재희 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현 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영선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영애 이성남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영희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진재희 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현 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강창일 이애주 최연희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희 이재오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복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진여옥 진재희 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현 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혜성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서병수 손학규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신상진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대평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영애 이영애 이용경 이윤희
 이윤성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진여옥
 진재희 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운선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권성동 성윤환 이명수 조정식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제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운선 조전혁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임영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권경석	고성동	권택기	김금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김先東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송영선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학규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정식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황진하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기권 의원(1인)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김학재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1인)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임 해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여 욱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욱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金先東 박 선 숙 이 인 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학 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제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윤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3인)

장기갑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2인)

곽정숙 김영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장기갑 장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제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윤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김춘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욱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충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회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金先東 김진애 이춘석 이학재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회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영록 박기춘 이정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회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용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를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회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영록 박기춘 이정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회	김 선 동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진	서 병 수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영 선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석 용	이 경 재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영 애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이 학 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변 웅 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성 윤 환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균 현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허 원 제	허 천	홍 영 표	홍 정 옥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영 애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반대 의원(3인)

강 기 갑 金 先 東 홍 희 덕

기권 의원(7인)

곽 정 숙 김 상 희 김 호 연 이 병 석
이 정 현 최 연 희 현 기 환

(강기갑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7인, 반대 의원 3인임)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구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회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이 경 재 이 명 규 이 명 수 이 균 현
이 명 수 이 범 관 이 상 권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주 영 이 춘 석 이 진 삼
이 춘 석 임 영 호 임 해 규 이 한 성
임 영 호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정태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근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기권 의원(1인)

임해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근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주영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이학재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기권 의원(3인)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이성남	이한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신지호	이한성	조전혁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영애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유성엽 이용경

기권 의원(9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나성린
박상은	이성남	정옥임	차명진
홍희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영애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황진하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중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김학용	김학재	김혜성	김호연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중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진섭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한기호	허원제	허천	홍영표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반대 의원(2인)

김진애 이영애

기권 의원(1인)

정옥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성희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상희
김동성	김동철	김성수	김성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희	김영선
김성식	김성태	김용태	김영선
김소남	김영록	김용태	김영선
김옥이	김용구	김재경	김영선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영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영선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영선
김학재	김혜성	김호연	김영선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영선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영선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영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박영선
서상기	서중표	서중표	박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상진	박영선
신지호	신학용	신학용	박영선
안민석	안형환	안형환	박영선
양승조	여상규	여상규	박영선
원유철	원희목	원희목	박영선
유일호	유정복	유정복	박영선
윤석용	이경재	이경재	박영선
이명규	이명수	이명수	박영선
이범관	이병석	이병석	박영선
이상득	이성남	이성남	박영선
이용희	이용희	이용희	박영선
이인기	이인기	이인기	박영선
이종걸	이종걸	이종걸	박영선
이진삼	이진삼	이진삼	박영선
이혜훈	이혜훈	이혜훈	박영선
장광근	장세환	장세환	박영선
전재희	전혜숙	전혜숙	박영선
정미경	정수성	정수성	박영선
정진섭	정진섭	정진섭	박영선
정희수	정희수	정희수	박영선
조영택	조영택	조영택	박영선
조진형	조진형	조진형	박영선
진영	진영	진영	박영선
최구식	최구식	최구식	박영선
최연희	최연희	최연희	박영선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박영선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박영선
황우여	황우여	황우여	박영선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김진애
 홍희덕
기권 의원(2인)
 유성엽 이화수
 (강창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0인, 찬성 의원 193인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2인)

유성엽 이인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7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두아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이은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황진하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3인)

김학재 유성엽 이경재
 (정옥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7인, 기권 의원 3인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6인)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립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명규 이명수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남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윤석 이윤석 이윤성
 이정선 이정선 이정선 이정현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장광근 장세환 장세환 정갑윤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영희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태근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희수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순형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곽정숙 金先東 홍희덕

기권 의원(3인)

김성태 유성엽 이인기
(정옥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6인, 기권 의원 3인임)

○아동빈곤법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정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진애 백재현
(안민석 의원 착오로 김유정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3인, 기권 의원 2인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이용경
 이유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2인)

송훈석 이인기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유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반대 의원(2인)

강기갑 金先東

기권 의원(4인)

곽정숙 김진애 최연희 홍희덕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재경 김재균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영애 이용경
 이유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반대 의원(2인)

강기갑 金先東

기권 의원(4인)

곽정숙 김진애 최연희 홍희덕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중 표
 손 범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김 영 선

기권 의원(6인)

강 기 갑 광 정 숙 김 상 희 金 先 東
 송 훈 석 홍 희 덕
 (김학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2인, 찬성 의원 185인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중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조경태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균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선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나성린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
 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광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송	김영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금래	김무성	김부결	김상희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김성린	김동철	김성곤	김성곤	김성동
노영민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김선동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신숙	김성수	김성순	김세연	김소남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김성태	김성회	김영우	김영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김영록	김영선	김용구	김용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김영환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정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김재경	김재균	김진애	김진표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김효석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윤석용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이상득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이용경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백재현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신건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신영수	신낙균	신학용	심대평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주호영	진성호	진영	최경환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추미애	허원제	허천	현기환	이상득	이병석	이성남	이상권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영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성현
황우여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출석 의원(27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유정복	유재중	윤상현	윤석용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윤영	이경재	이낙연	이명수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윤석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이재선	이춘식	이학재	이해봉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이한구	이한성	이회창	임동규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임영호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조승수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경환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홍일표	황진하		
황우여	황진하						

○개회 시 재석 의원(170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선택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태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재경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호연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박기춘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변웅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산회 시 재석 의원(26인)

강기갑	강명순	곽정숙	김낙성
김상희	金先東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노영민	박병석
박선영	양승조	이용희	이주영
이진복	이회창	임영호	전현희
정의화	정하균	정해결	조윤선
천정배	최규성		

○청가 의원(6인)

김태호	문희상	손숙미	송민순
윤진식	이석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입법차장	김성곤
의사국장	한공식

○출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방부장관	김관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 석 환
 보건복지부차관 최 원 영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금융위원장 김 석 동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공성진	서울강남을	한나라당	퇴직	2011. 6. 9
현경병	서울노원갑			2011. 6. 10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재판소재판관 (조용환)선출안에 대한인사청문특별	이종걸	민주당	2011 6. 21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장윤석 구상찬	한나라당	2011. 6. 15
	권경석 김광립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용태		
	김재경 김태환		
	박순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안효대 여상규		
	윤진식 이성현		
	이정현 이종혁		
	장제원 정미경		
	정진섭 정태근		
조원진 조전혁			
주광덕 한기호			
헌법재판 소재판관 (조용환) 선출안에 대한인사 청문특별	주호영 박민식	한나라당	2011. 6. 17
	박준선 신지호		
	이은재 이한성		
	홍일표	민주당	
	이종걸 김학재		
	이춘식 전현희		
	박선영 정하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무	우제창	민주당	2011. 5. 27
환경노동	이범관	한나라당	2011. 6. 10
예산결산 특별	장윤석	한나라당	2011. 6. 21
	강기정	민주당	
헌법재판소재판관 (조용환)선출안에 대한인사청문특별	주호영	한나라당	2011. 6. 21
	전현희	민주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정옥임	정무	외교통상통일	한나라당	2011. 6. 10
김효재	외교통상통일	정무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박지원	김진표	민주당	2011. 6. 7
국회 운영	권선택	김낙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1. 6. 21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사법제도 개혁특별	손범규	이은재	한나라당	2011. 6. 13
예산결산 특별	최재성	전혜숙	민주당	2011 6. 15
사법제도 개혁특별	이은재	손범규	한나라당	2011 6. 20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공성진	한나라당	퇴직	2011. 6. 9
김효재		탈당	2011. 6. 10
현경병		퇴직	

○의안 제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8 정부 제출)

6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성윤환·조진래·김태환·김태호·강석호·이상권·이화수·김성수·이춘식·정해걸·김성동·진영·김학용·김장수·

윤석용 · 박상은 · 이철우 의원 발의)

6월 9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강창일 · 김재균 · 최규성 · 송민순 · 조정식 · 장세환 · 이낙연 · 전해숙 · 이찬열 · 조영택 의원 발의)

6월 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김세연 · 박대해 · 장제원 · 현기환 · 유기준 · 박민식 · 서병수 · 이진복 · 김정훈 · 유재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박보환 · 서상기 · 김선동 · 조진혁 · 배은희 · 권영진 · 정두언 · 김태환 · 정해걸 · 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손숙미 · 최경희 · 이은재 · 조진래 · 김금래 · 윤영 · 이한성 · 원희목 · 김소남 · 안홍준 · 유재중 의원 발의)

6월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이성남 · 윤석용 · 강기정 · 강봉균 · 조영택 · 김재균 · 김상희 · 김재운 · 이석현 · 김성곤 · 신낙균 · 유선호 · 박은수 · 송민순 · 김유정 · 최종원 · 신건 · 노영민 · 최영희 · 안민석 · 양승조 · 전해숙 · 유성엽 · 원혜영 · 최규식 · 백재현 · 이찬열 · 임영호 · 권선택 · 박선숙 의원 발의)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장윤석 · 이정선 · 정희수 · 허천 · 박대해 · 이한성 · 현기환 · 박민식 · 홍사덕 · 김옥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이미경 · 김영록 · 최재성 · 송민순 · 이찬열 · 박지원 · 박우순 · 노영민 · 안규백 · 강창일 · 정범구 · 추미애 · 최영희 · 김진애 · 장병완 · 김충조 · 홍영표 · 김상희 · 김성곤 ·

오제세 · 김재운 · 전해숙 · 박은수 · 이용섭 ·

조배숙 · 유선호 · 홍희덕 · 강기갑 의원 발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장윤석 · 이정선 · 이종혁 · 박대해 · 이한성 · 박민식 · 홍사덕 · 김옥이 · 송광호 · 최구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김을동 · 한기호 · 정해걸 · 이한성 · 신영수 · 이명수 · 홍일표 · 이종혁 · 신상진 · 홍사덕 · 한선교 · 이사철 · 정의화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8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조윤선 · 유기준 · 이한성 · 정희수 · 임해규 · 장윤석 · 원혜영 · 조진형 · 전재희 · 강승규 · 신성범 · 김성수 · 성윤환 · 김성동 · 김태호 · 정태근 · 원희목 · 박준선 · 조문환 · 나경원 · 김을동 · 최구식 · 진성호 · 이철우 · 차명진 · 김효재 · 허천 · 김영선 · 김정권 · 김금래 · 권성동 의원 발의)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정하균 · 고흥길 · 권영진 · 노철래 · 유성엽 · 이경재 · 이낙연 · 이종혁 · 이한성 · 정옥임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유재중 · 원희목 · 유기준 · 윤석용 · 이낙연 · 현경병 · 이춘식 · 정옥임 · 이정선 · 권영진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양승조 · 박은수 · 주승용 · 전현희 · 강기정 · 백원우 · 장병완 · 이성남 · 이낙연 · 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1. 6. 8 유재중 · 원희목 · 유기준 · 윤석용 · 이낙연 · 현경병 · 이춘식 · 정옥임 · 이정선 ·

권영진 의원 발의)

6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차명진 · 정태근 · 권성동 · 윤석용 · 김성식 · 강명순 · 김광림 · 유일호 · 박영아 · 김학용 · 이정선 · 이두아 · 임동규 · 이사철 · 김태원 · 안효대 · 이은재 · 박대해 · 김영선 · 이화수 의원 발의)

6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이춘석 · 주승용 · 강창일 · 박은수 · 조정식 · 신건 · 원혜영 · 강기정 · 박우순 · 장병완 · 정범구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이춘석 · 주승용 · 강창일 · 박은수 · 조정식 · 신건 · 원혜영 · 강기정 · 박우순 · 장병완 · 정범구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정옥임 · 신상진 · 이춘석 · 권영진 · 유정현 · 김효재 · 신성범 · 이사철 · 김성태 · 김금래 · 나성린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정옥임 · 신상진 · 이춘석 · 권영진 · 유정현 · 김효재 · 신성범 · 이사철 · 김성태 · 김금래 · 나성린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이미경 · 조배숙 · 정범구 · 강창일 · 홍영표 · 양승조 · 전해숙 · 박은수 · 주승용 · 이용섭 · 우윤근 · 이춘석 · 백재현 · 김진표 · 노영민 · 이윤석 · 김재윤 · 김상희 · 김충조 · 이찬열 · 김영진 · 송훈석 · 최영희 의원 발의)

6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강기갑 · 광정숙 · 이정희 · 권영길 · 홍희덕 · 金先東 · 천정배 · 유성엽 · 이낙연 · 이미경 · 조승수 · 김재윤 · 유원일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차명진 · 정태근 · 권성동 · 김학용 · 이화수 · 이은재 · 이정선 · 이애주 · 이두아 · 김태원 · 김옥이 · 윤상일 · 김을동 · 박준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최규식 · 박선숙 · 박영선 · 이낙연 · 백재현 · 이명수 · 강창일 · 심대평 · 김태원 · 최영희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이정선 · 김성희 · 강성천 · 박준선 · 김소남 · 손숙미 · 이명규 · 김태원 · 안홍준 · 송영선 · 노철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최규식 · 김정권 · 강봉균 · 조영택 · 유선호 · 박선숙 · 유성엽 · 백재현 · 원혜영 · 강기정 · 임영호 의원 발의)

6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정옥임 · 신상진 · 이춘석 · 권영진 · 유정현 · 김효재 · 신성범 · 이사철 · 김성태 · 김금래 · 나성린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6. 9 윤석용 · 권영진 · 김정권 · 박은수 · 이경재 · 신상진 · 유성엽 · 윤영 · 안홍준 · 박준선 · 김무성 의원 발의)

6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윤석용 · 현기환 · 이윤성 · 정의화 · 권영세 · 이해봉 · 김호연 · 박준선 · 김무성 · 배은희 의원 발의)

6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윤석용 · 조원진 · 황우여 · 이명수 · 황영철 · 김세연 · 김성태 · 정태근 · 박민식 · 김정권 · 신성범 · 윤영 · 안홍준 · 박준선 의원

발의)

6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김성태·차명진·김충환·이한성·유정현·김태환·정태근·김태호·최구식·허천·강석호·김태원·김효재·이화수·정두언·서병수·배영식·현기환·정옥임·백성운·김장수·이종혁·이경재·정해걸·조진래·김소남·정영희·최경희·원희목·나경원·조전혁·김세연·윤석용·김성식·신성범·황영철·권영진·김선동·권영세·조진형·김기현·이은재·박순자·권경석·박민식·김학용·주광덕·안효대·김성희·신상진 의원 발의)

6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박순자·주광덕·이인기·안홍준·이한성·권선택·안형환·백재현·유원일·송광호 의원 발의)

6월 14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이사철·정해걸·김우남·정갑윤·김을동·김태환·정수성·김금래·박준선·송훈석 의원 발의)

6월 13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이명규·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김태환·정해걸·정희수·조진래·이학재·이명규·강용석·배은희·김성조·안상수·이해봉·박보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이미경·백재현·정범구·추미애·최영희·김진애·장병완·김충조·홍영표·김상희·김성곤·오제세·김영록·최재성·송민순·이찬열·박지원·박우순·노영민·

안규백·강창일·이용섭·박은수 의원 발의)

6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이명수·김용구·김창수·정의화·류근찬·김낙성·이은재·심대평·권선택·김을동·박선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오제세·정장선·양승조·김성곤·최종원·백원우·박영선·조영택·유성엽·변웅전·최규성·김효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송광호·박영아·이인기·김형오·윤석용·서종표·박병석·박선숙·이성남·허천·장광근·변재일·정범구·윤진식·이진삼·홍재형·김호연·박순자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권선택·심대평·이인제·이명수·이진삼·임영호·이재선·김창수·변웅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

(2011. 6. 10 의장 제의)

6월 15일 헌법재판소재판관(조용환)선출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박상은·이애주·강명순·김금래·최경희·김성수·신성범·이춘식·신상진·여상규·성윤환·김학용·김광림·나성린 의원 발의)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박상은·이애주·강명순·김금래·최경희·김성수·신성범·이춘식·신상진·여상규·성윤환·김학용·김광림·나성린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오제세 · 김창수 · 김영록 · 임영호 · 손범규 · 이종걸 · 김성곤 · 최종원 · 조영택 · 정동영 · 박주선 · 정장선 · 전병헌 · 김춘진 · 이낙연 · 양승조 · 류근찬 · 김재균 · 박우순 · 김부겸 · 유성엽 · 이명수 · 강창일 · 백재현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 · 최규성 · 강기정 · 조경태 · 박선숙 · 장세환 · 조영택 · 장병완 · 박은수 · 주승용 의원 발의)

6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 · 최규성 · 강기정 · 조경태 · 박선숙 · 이낙연 · 장세환 · 조영택 · 장병완 · 박은수 · 주승용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 · 최규성 · 강기정 · 조경태 · 박선숙 · 이낙연 · 장세환 · 조영택 · 박은수 · 주승용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 · 최규성 · 강기정 · 조경태 · 박선숙 · 이낙연 · 장세환 · 조영택 · 장병완 · 박은수 · 주승용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김영진 · 박은수 · 유선호 · 조영택 · 강창일 · 김성곤 · 유성엽 · 정동영 · 문학진 · 장세환 · 김재균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

(2011. 6. 13 김동철 · 박주선 · 김영진 · 원혜영 · 김우남 · 김재균 · 신낙균 · 조영택 · 최규식 · 유선호 · 문희상 · 전해숙 · 송훈석 · 박은수 · 주승용 · 최재성 · 최영희 · 최인기 의원 발의)

6월 1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배은희 · 최경희 · 이명규 · 김세연 · 서상기 · 박보환 · 김태환 · 이정선 · 박순자 ·

이상민 · 김무성 · 정의화 · 나성린 · 조전혁 · 권영진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배은희 · 이경제 · 김기현 · 김세연 · 서상기 · 박보환 · 김태환 · 이정선 · 이상민 · 김무성 · 임해규 · 정의화 · 나성린 · 조전혁 · 권영진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이상민 · 권영길 · 이명수 · 김창수 · 조전혁 · 심대평 · 조승수 · 안민석 · 유성엽 · 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윤영 · 장광근 · 윤석용 · 손숙미 · 안효대 · 노철래 · 정해걸 · 김낙성 · 조진래 · 장제원 의원 발의)

6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김선동 · 윤석용 · 김성곤 · 성윤환 · 이한성 · 유승민 · 유기준 · 조전혁 · 권영진 · 여상규 · 김정훈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강기정 · 김우남 · 백재현 · 강창일 · 김재균 · 정범구 · 김동철 · 최규성 · 문학진 · 김재윤 · 최규식 · 이춘석 · 양승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박준선 · 강승규 · 김금래 · 김동성 · 김성동 · 김성희 · 김소남 · 김영우 · 김용태 · 백성운 · 손숙미 · 안경률 · 원희목 · 유정현 · 이춘식 · 임동규 · 임해규 · 조문환 · 조전혁 · 진성호 · 최병국 · 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신성범 · 김낙성 · 유재중 · 김영선 · 박민식 · 권영진 · 최구식 · 윤석용 · 여상규 · 조진래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신성범 · 김낙성 · 유재중 · 김영선 · 박민식 · 권영진 · 최구식 · 윤석용 · 여상규 ·

조진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3 강봉균 · 김우남 · 김효석 · 조영택 · 전병헌 · 최인기 · 송훈석 · 주승용 · 오제세 · 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이명수 · 이윤석 · 이재선 · 김창수 · 최규식 · 김태원 · 김을동 · 김낙성 · 임영호 · 권선택 의원 발의)

6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3 신상진 · 박준선 · 이은재 · 박진 · 김성곤 · 권성동 · 정영희 · 이정선 · 정옥임 · 윤영 · 정해걸 · 홍준표 · 임동규 · 허태열 · 이사철 · 고승덕 · 정하균 · 강명순 · 박상은 · 원희목 · 손숙미 · 유기준 · 이두아 · 박민식 · 여상규 · 김선동 의원 발의)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노철래 · 유정현 · 김정 · 윤상일 · 김혜성 · 강용석 · 정영희 · 김용구 · 송영선 · 정수성 의원 발의)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4 양승조 · 최영희 · 박우순 · 추미애 · 이종걸 · 박은수 · 이춘석 · 주승용 · 조정식 · 장세환 · 이낙연 의원 발의)

6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4 이인기 · 유정현 · 윤상일 · 김소남 · 정수성 · 고흥길 · 임동규 · 김태원 · 김충조 · 이정선 · 최경희 · 장세환 · 김정권 · 박대해 · 안경률 · 안효대 · 서병수 의원 발의)

6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4 양승조 · 최영희 · 박우순 · 추미애 · 이종걸 · 박은수 · 전현희 · 이춘석 · 주승용 · 장세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양승조 · 최영희 · 박우순 · 추미애 · 이종걸 · 박은수 · 주승용 · 장세환 · 이낙연 · 유선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양승조 · 최영희 · 박우순 · 추미애 · 이종걸 · 박은수 · 전현희 · 이춘석 · 주승용 · 조정식 · 이낙연 · 장세환 의원 발의)

6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1. 6. 14 정부 제출)

6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북한민생인권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김동철 · 이찬열 · 정장선 · 강기정 · 원혜영 · 김영록 · 박영선 · 신낙균 · 박우순 · 조영택 · 문희상 · 최재성 · 이성남 · 김진표 · 우제창 의원 발의)

6월 1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김학송 · 김정권 · 이한성 · 문희상 · 송광호 · 김효재 · 이해봉 · 정태근 · 강석호 · 유승민 · 주호영 의원 발의)

6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4 김춘진 · 이낙연 · 조영택 · 김성곤 · 유선호 · 강창일 · 유성엽 · 조전혁 · 김유정 · 김상희 · 김선동 의원 발의)

6월 1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박선숙 · 조정식 · 이춘석 · 장세환 · 유선호 · 신낙균 · 최규성 · 신건 · 조영택 · 박영선 · 김상희 · 최재성 · 김동철 · 이성남 · 홍재형 · 백재현 · 추미애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5 박선숙 · 조정식 · 이춘석 · 장세환 · 유선호 · 신낙균 · 최규성 · 신건 · 조영택 · 박영선 · 김상희 · 최재성 · 김동철 · 이성남 · 홍재형 · 백재현 · 추미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김학송 · 강용석 · 김정권 · 이주영 · 안홍준 · 권영길 · 김태호 · 조진래 · 김장수 · 권경석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정진섭 · 조해진 · 김영우 · 김용구 · 강성천 · 김금래 · 노철래 · 홍영표 · 신영수 · 조원진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고승덕 · 김영우 · 송민순 · 이한성 · 최경희 · 강용석 · 박준선 · 배영식 · 김성동 · 정해걸 · 이사철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여상규 · 이두아 · 조진래 · 정의화 · 정해걸 · 김학송 · 이종구 · 강석호 · 박대해 · 이정선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조경태 · 노영민 · 주승용 · 강기갑 · 이정희 · 권영길 ·곽정숙 · 金先東 · 홍희덕 · 조정식 · 천정배 · 유선호 · 조승수 · 강창일 · 박주선 · 김영록 · 이종걸 · 김재균 · 정동영 · 전병헌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김학용 · 김광림 · 유일호 · 김태원 · 고흥길 · 김영선 · 이두아 · 차명진 · 정해걸 · 이화수 · 성윤환 의원 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김을동 · 홍사덕 · 이한성 · 유성영 · 이명수 · 이사철 · 노철래 · 조경태 · 신상진 · 김성동 · 김태환 · 정해걸 · 정미경 · 조진래 · 한기호 · 한선교 · 진성호 · 최종원 · 조윤선 · 김재윤 · 조진형 의원 발의)

경찰관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김정권 · 김소남 · 유정현 · 구상찬 · 김학용 · 강길부 · 조원진 · 김학송 · 김무성 · 김태원 · 조진형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정수성 · 홍사덕 · 김정권 · 박대해 · 유승민 · 이한성 · 이사철 · 정해걸 · 한기호 · 노철래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박대해 · 권선택 · 허원제 · 김정훈 · 이한성 · 장윤석 · 박준선 · 여상규 · 홍일표 · 김태원 · 권경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나경원 · 김소남 · 이명규 · 유기준 · 황영철 · 이정선 · 이한성 · 한선교 · 김기현 · 김태원 · 주성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김춘진 · 이용희 · 안민석 · 김상희 · 이윤석 · 김영진 · 김영록 · 강기정 · 김성곤 · 권영길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김춘진 · 이용희 · 안민석 · 김상희 · 이윤석 · 김영진 · 김영록 · 권영진 · 강기정 · 김성곤 · 권영길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김광림 · 김학용 · 성윤환 · 김성수 · 서상기 · 김선동 · 이범래 · 허태열 · 배영식 · 정영희 · 심대평 · 유정현 · 최경희 · 원희목 · 이춘식 · 박상은 · 강길부 · 조진래 · 정해걸 · 김호연 · 윤영 · 고흥길 · 김소남 · 최연희 · 이인기 · 장광근 · 백성운 · 김효석 · 김성곤 · 오제세 · 홍재형 · 유일호 · 서병수 · 김성조 · 임동규 · 최경환 · 박대해 · 김태원 · 김옥이 ·

이정현 · 김동성 · 진영 · 김성동 · 이두아 · 이정선 · 홍사덕 · 김재경 · 이종혁 · 김태환 · 김장수 · 유재중 · 홍준표 · 송광호 · 이진복 · 김효재 · 김용태 · 정옥임 · 나경원 · 차명진 · 박보환 · 김충조 · 최인기 · 양승조 · 김우남 · 이미경 · 김정훈 · 윤석용 · 이상권 · 윤상현 · 허천 · 김형오 · 이명규 · 정진섭 · 김세연 · 김태호 · 정태근 · 강승규 · 여상규 · 나성린 · 이한구 · 이성현 · 이성남 · 강석호 · 이화수 · 박준선 · 이애주 · 허원제 · 신성범 · 전여옥 · 박진 · 박병석 · 박영아 · 김성식 · 정갑윤 · 정수성 · 박순자 · 정하균 · 노철래 · 김정 · 박선숙 · 이종구 · 김학송 · 이용희 · 장병완 · 남경필 · 장윤석 · 권경석 · 정양석 · 이용섭 · 김혜성 · 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16 정부 제출)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6 김광림 · 김학용 · 성윤환 · 김성수 · 서상기 · 김선동 · 이범래 · 허태열 · 배영식 · 정영희 · 심대평 · 유정현 · 최경희 · 원희목 · 이춘식 · 박상은 · 강길부 · 조진래 · 정해걸 · 김호연 · 윤영 · 고흥길 · 김소남 · 최연희 · 이인기 · 장광근 · 백성운 · 김효석 · 김성곤 · 오제세 · 홍재형 · 유일호 · 서병수 · 김성조 · 임동규 · 최경환 · 박대해 · 김태원 · 김옥이 · 이정현 · 김동성 · 진영 · 김성동 · 이두아 · 이정선 · 홍사덕 · 김재경 · 이종혁 · 김태환 · 김장수 · 유재중 · 홍준표 · 송광호 · 이진복 · 김효재 · 김용태 · 정옥임 · 나경원 · 차명진 · 박보환 · 김충조 · 최인기 · 양승조 · 김우남 · 이미경 · 김정훈 · 윤석용 · 이상권 · 윤상현 · 허천 · 김형오 · 이명규 · 정진섭 · 김세연 · 김태호 · 정태근 · 강승규 · 여상규 · 나성린 · 이한구 · 이성현 · 이성남 · 강석호 · 이화수 · 박준선 · 이애주 · 허원제 · 신성범 · 전여옥 · 박진 · 박병석 · 박영아 · 김성식 · 정갑윤 · 정수성 · 박순자 · 정하균 · 노철래 · 김정 · 박선숙 · 이종구 · 김학송 · 이용희 · 장병완 · 남경필 · 장윤석 · 권경석 · 정양석 · 이용섭 · 김혜성 · 조배숙 의원 발의)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이낙연 · 정영희 · 조영택 · 박선숙 · 손범규 · 최인기 · 윤석용 · 양승조 · 김춘진 · 김용구 · 강창일 의원 발의)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배은희 · 이명규 · 정두연 · 박보환 · 김정권 · 김무성 · 이정선 · 서상기 · 김학송 · 손범규 · 김소남 · 나성린 · 현기환 · 이한성 · 원희목 · 권영진 · 정의화 · 윤상현 · 김옥이 의원 발의)

**6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7 오제세 · 임영호 · 정장선 · 김성곤 · 조정식 · 박우순 · 김효석 · 주승용 · 김우남 · 김용구 · 유성엽 · 조배숙 의원 발의)

**6월 20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김태원 · 김소남 · 이한성 · 정해걸 · 김기현 · 정희수 · 최인기 · 권경석 · 유정현 · 손범규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1. 6. 17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2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정하균 · 권선택 · 권영진 · 김옥이 · 김혜성 · 노철래 · 류근찬 · 손범규 · 이춘식 · 이한성 · 조진래 의원 발의)

**6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 6. 17 권경석 · 신상진 · 허원제 · 김정권 · 심대평 · 황영철 · 조영택 · 이철우 · 정의화 · 허태열 · 안경률 · 최연희 · 차명진 · 김형오 · 김기현 · 김충환 · 원희룡 · 안홍준 · 정갑윤 · 조진형 · 정범구 · 김성조 · 이한구 · 김광림 · 강길부 · 이용섭 · 김성식 · 박근혜 · 나성린 · 이혜훈 · 박준선 · 이한성 · 신지호 · 이은재 · 이정현 · 김태원 · 김옥이 · 고승덕 · 여상규 · 유일호 · 최경환 · 오제세 · 박우순 · 김성곤 ·

이정선 · 박대해 · 장윤석 · 권성동 · 원혜영 · 권영세 · 홍재형 · 이학재 · 김재경 · 서상기 · 김정훈 · 최구식 · 주성영 · 김태환 · 유승민 · 정진섭 · 박상은 · 나경원 · 이종혁 · 원희목 · 서병수 · 배영식 · 김성태 · 강명순 · 강승규 · 최인기 · 이낙연 · 김소남 · 장제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이상민 · 서상기 · 조전혁 · 안민석 · 임해규 · 권영진 · 박영아 · 권영길 · 이명수 ·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이인기 · 김정권 · 정영희 · 서병수 · 임동규 · 박대해 · 김소남 · 최경희 · 김태원 · 강창일 · 박지원 · 유선호 · 김성곤 · 이종걸 · 박은수 · 최인기 · 김재윤 · 정해걸 · 윤상일 · 정수성 · 이석현 · 문학진 · 정갑윤 · 박기춘 · 김충조 의원 발의)

6월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이정현 · 홍정욱 · 권영진 · 김정 · 김선동 · 구상찬 · 김옥이 · 조원진 · 유정복 · 권영세 의원 발의)

6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정태근 · 최연희 · 정영희 · 이화수 · 김재균 · 김영환 · 김태환 · 김재경 · 김세연 · 이종혁 · 주광덕 · 현기환 · 김성식 의원 발의)

6월 2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박선숙 · 박기춘 · 김동철 · 최규성 · 이미경 · 송민순 · 조영택 · 장세환 · 이석현 · 유선호 · 노영민 · 이성남 · 신낙균 · 우제창 · 원혜영 의원 발의)

6월 2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황영철 · 이경재 · 이종혁 · 김성수 · 윤진식 · 김정훈 · 권영진 · 한기호 · 이한성 · 박준선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황영철 · 이경재 · 김성수 · 윤진식 · 김정훈 · 권영진 · 한기호 · 김충환 · 박준선 · 김세연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김효석 · 김재균 · 전병현 · 최규성 · 김동철 · 성윤환 · 오제세 · 김우남 · 여상규 · 최재성 · 백재현 · 이강래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김효석 · 김재균 · 전병현 · 최규성 · 김동철 · 성윤환 · 오제세 · 김우남 · 이춘석 · 최재성 · 백재현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김효석 · 김재균 · 전병현 · 최규성 · 김동철 · 오제세 · 김우남 · 이춘석 · 최재성 · 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1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정영희 · 노철래 · 심대평 · 유성엽 · 유정현 · 윤상일 · 윤석용 · 이낙연 · 이윤성 · 임영호 · 현기환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이경재 · 안상수 · 김우남 · 박상천 · 이학재 · 강기정 · 김소남 · 박상은 · 이윤성 · 권택기 · 홍일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장광근 · 최영희 · 이재선 · 이애주 · 윤석용 · 이낙연 · 이춘식 · 김세연 · 황영철 · 박준선 · 추미애 · 김금래 · 신성범 · 김성순 · 이인제 · 이해봉 · 정희수 의원 발의)

6월 2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홍일표 · 이윤성 · 이학재 · 이정선 · 이상권 · 윤영 · 이경재 · 조진형 · 이은재 · 이병석 · 조윤선 · 신성범 의원 발의)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0 이강래 · 김춘진 · 김용구 · 여상규 · 조영택 · 이경재 · 박은수 · 김영진 · 김세연 · 안규백 · 김영록 · 김금래 · 오제세 · 변웅전 · 전해숙 · 문희상 · 김광림 · 김을동 · 이용섭 · 이화수 · 박선숙 · 김성곤 의원 발의)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0 최재성 · 백원우 · 백재현 · 문희상 · 장세환 · 이낙연 · 송민순 · 김재균 · 신건 · 김춘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0 배은희 · 이정선 · 박보환 · 김소남 · 손숙미 · 김무성 · 안형환 · 정두언 · 이종혁 · 현기환 · 이애주 · 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이종혁 · 송민순 · 임동규 · 여상규 · 유성엽 · 김영선 · 김을동 · 유기준 · 서상기 · 김용구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조원진 · 김호연 · 박준선 · 이학재 · 서상기 · 홍사덕 · 정희수 · 김정권 · 김학용 · 박보환 · 김옥이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이종혁 · 임동규 · 김정권 · 서상기 · 김영선 · 유기준 · 여상규 · 김을동 · 송민순 · 김용구 의원 발의)

6월 2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조원진 · 이학재 · 서상기 · 홍사덕 · 김정권 · 정희수 · 김성동 · 김옥이 · 김성조 · 강용석 의원 발의)

6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이한구 · 정장선 · 김재경 · 윤석용 · 배은희 · 신지호 · 박보환 · 손숙미 · 홍일표 · 황진하 · 장윤석 · 권영진 · 김혜성 · 이한성 · 유성엽 · 유승민 · 김호연 · 이경재 · 김광림 의원 발의)

6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이한구 · 이한성 · 윤석용 · 유성엽 · 김호연 · 김소남 · 김금래 · 원희목 · 주성영 · 정희수 · 박민식 · 현기환 · 김광림 의원 발의)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정보교육진흥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서상기 · 정두언 · 김세연 · 이종혁 · 박보환 · 조진혁 · 조원진 · 권영진 · 윤상일 · 이상민 · 이군현 · 박영아 의원 발의)

6월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6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권경석 · 노철래 · 이명수 · 박대해 · 정영희 · 이은재 · 정진섭 · 신성범 · 김소남 · 김영우 의원 발의)

6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이춘석 · 정범구 · 안규백 · 백재현 · 강기정 · 박지원 · 조정식 · 주승용 · 박우순 · 전현희 의원 발의)

6월 2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정범구 · 강기정 · 박은수 · 주승용 · 이춘석 · 송훈석 · 이미경 · 김유정 · 이윤석 · 전현희 의원 발의)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11. 6. 21 주성영 · 정태근 · 이한성 · 정두언 · 김성식 · 구상찬 · 김용태 · 조문환 · 남경필 · 이정선 · 강명순 의원 발의)

6월 22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이낙연 · 양승조 · 김태원 · 송훈석 · 김춘진 · 김용구 · 강창일 · 손범규 · 최인기 · 최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김영진 · 박선숙 · 이애주 · 이윤석 · 신낙균 · 김영우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재경 · 이한성 · 박대해 · 강창일 · 조전혁 · 손범규 · 강승규 · 진영 · 김영우 · 조진래 · 원희복 · 배은희 · 김소남 · 김성동 · 박준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우남 · 정동영 · 강기정 · 김영록 · 김재윤 · 송민순 · 김효석 · 이윤석 · 강창일 ·

유성엽 · 양승조 · 오제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김우남 · 강기정 · 김영록 · 김재윤 · 송민순 · 유성엽 · 양승조 · 오제세 · 최인기 · 이사철 · 이윤석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우남 · 정동영 · 강기정 · 김영록 · 김재윤 · 송민순 · 유성엽 · 양승조 · 오제세 · 김효석 · 이윤석 · 강창일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김우남 · 정동영 · 강기정 · 김영록 · 김재윤 · 송민순 · 유성엽 · 양승조 · 오제세 · 김효석 · 이윤석 · 강창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태원 · 김영선 · 손범규 · 김정훈 · 유기준 · 정희수 · 유정복 · 이한성 · 유성엽 · 권경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우남 · 강기정 · 김영록 · 김재윤 · 송민순 · 유성엽 · 양승조 · 오제세 · 강기갑 · 이윤석 · 강창일 의원 발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 6. 22 정동영 · 강기갑 · 강창일 · 권영길 · 김부겸 · 김영진 · 김재윤 · 박선숙 · 박영선 · 서종표 · 신건 · 안규백 · 원희룡 · 유선호 · 유성엽 · 유승민 · 유원일 · 이용희 · 이윤석 · 이정현 · 이종걸 · 이정희 · 이한구 · 장세환 · 정두언 · 정태근 · 조승수 · 조영택 · 천정배 · 최규성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박영선 · 박우순 · 김동철 · 강기정 · 박은수 · 유선호 · 양승조 · 이종걸 · 신건 · 김학재 · 원혜영 의원 발의)

6월 2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한기호 · 김세연 · 김옥이 · 김용태 ·

김장수 · 김태환 · 박우순 · 장제원 · 정해걸 ·
황영철 의원 발의)

6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1. 6. 22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균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이균현 · 김성동 · 김용태 · 박대해 ·
박민식 · 서상기 · 신성범 · 여상규 · 유재중 ·
이명규 · 허원제 의원 발의)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서상기 · 정두언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혁 · 홍사덕 · 임해규 · 윤상일 · 조원진 ·
이명규 · 권영진 · 주성영 의원 발의)

6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장세환 · 김성곤 · 문학진 · 송민순 ·
양승조 · 유선호 · 이석현 · 김상희 · 최규식 ·
최규성 의원 발의)

6월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정갑윤 · 안효대 · 노철래 · 김기현 ·
신성범 · 배은희 · 강길부 · 최병국 · 장제원 ·
이윤석 · 김무성 · 이화수 · 김소남 · 이은재 ·
이사철 · 강창일 · 최규식 · 서병수 · 원유철 의원
발의)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011. 6. 23 의장 제의)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5일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6. 22 정무위원장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6. 23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 · 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 ·
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

(이상 2건 2011. 6. 23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6. 22 국방위원장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6. 22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1. 6. 23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6. 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11. 6. 20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1. 6. 22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1. 6. 23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2010. 4. 7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1. 5. 27 조영택·오제세·박지원·박주선·박기춘·유선호·김효석·최종원·강기정·원혜영·천정배·전병헌·백재현·김부겸·임영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8. 6. 17 신학용·강창일·이해봉·김종률·황영철·조전혁·양승조·김희철·강석호·정하균·홍정욱·우제창·김동성·조배숙·김영진·홍일표·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5 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2건 2010. 4. 30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4 김재경·원희룡·유성엽·황영철·김성수·강석호·이명수·권영진·박종희·임영호·나경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정무위원장 보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명수·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김소남·윤상일·권선택·이인기·임영호·김창수·김용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10 정부 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 발의)

(2009. 9. 3 정태근·신성범·박민식·현기환·권영진·이혜훈·나성린·김성태·주광덕·정두언·윤석용·황영철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2. 3 이혜훈·유승민·우제창·한선교·현경병·권영진·이경재·박상은·조경태·원희룡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이윤성·윤석용·유기준·이한성·신상진·김정훈·임영호·이인기·손범규·전혜숙·고홍길·이석현 의원 발의)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11. 5. 6 박선영·강성천·권선택·김낙성·김소남·김용구·류근찬·변용전·신상진·신영수·이용희·이진삼·임영호·최재성·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 신상진·손숙미·임두성·유기준·김춘진·이한성·안홍준·유재중·유성엽·김성수·김성태·이애주·손범규·김정훈·심재철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7 신낙균·송민순·강창일·유선호·김효석·최재성·박은수·최인기·강용석·원혜영·김재윤·추미애·박주선·강기정·김영진·안규백·문학진·박우순·서종표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0. 3. 29 이찬열·강창일·김영진·김재윤·김혜성·박기춘·송민순·송영길·신학용·오제세·원혜영·유기준·이성현·장세환·조배숙·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 제공 촉구

결의안

(2010. 9. 1 박선영 · 강기갑 · 강성종 · 김동성 · 김성곤 · 김영진 · 김옥이 · 김정권 · 김태원 · 김혜성 · 박진 · 박상은 · 박은수 · 서갑원 · 신상진 · 양승조 · 유성엽 · 이주영 · 임영호 · 장윤석 · 홍일표 의원 발의)

일본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2010. 7. 30 박선영 · 김낙성 · 김영진 · 김옥이 · 김용구 · 김혜성 · 김정 · 구상찬 · 강창일 · 권선택 · 류근찬 · 박상은 · 변웅전 · 서갑원 · 이주영 · 이회창 · 이명수 · 이용섭 · 이용희 · 이종혁 · 임영호 · 우윤근 · 유선호 · 유성엽 · 장광근 · 장세환 · 최영희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제2차세계대전 직후 사할린에서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한인) 학살 진상조사 및 전후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2010. 7. 30 박선영 · 김낙성 · 김옥이 · 김창수 · 김정 · 김영진 · 김용구 · 김혜성 · 강창일 · 구상찬 · 권선택 · 류근찬 · 박상은 · 변웅전 · 백재현 · 서갑원 · 서종표 · 이주영 · 이회창 · 이명수 · 이용섭 · 이용희 · 이종혁 · 우윤근 · 유선호 · 유성엽 · 임영호 · 조정식 · 장세환 · 장광근 · 최영희 · 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25 정부 제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21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0 신학용 · 김을동 · 양승조 · 홍사덕 ·

이운성 · 김성곤 · 조정식 · 홍영표 · 김상희 · 김진표 · 김효석 · 최영희 · 이찬열 · 김부겸 · 백원우 · 강창일 · 이윤석 · 황우여 · 장병완 · 정병국 · 안규백 의원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 발의)

(2011. 1. 18 정미경 · 강석호 · 공성진 · 이화수 · 강성천 · 김을동 · 김소남 · 박순자 · 황우여 · 정병국 · 이학재 · 조전혁 · 김성희 · 정희수 · 진영 · 김정훈 · 이철우 · 김무성 · 홍사덕 · 이운성 · 성윤환 · 안형환 · 원희목 · 정양석 · 허태열 · 서상기 · 배영식 · 최병국 · 박보환 · 주광덕 · 이영애 · 임영호 · 이진삼 · 이주영 · 박대해 · 안효대 · 임동규 · 정해걸 · 조원진 · 손범규 · 이정선 · 배은희 · 강명순 · 이한성 · 장윤석 · 박진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신학용 · 김을동 · 양승조 · 홍사덕 · 이운성 · 김성곤 · 조정식 · 홍영표 · 김상희 · 김진표 · 김효석 · 최영희 · 이찬열 · 김부겸 · 백원우 · 강창일 · 이윤석 · 황우여 · 장병완 · 정병국 · 안규백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 14 정미경 · 강석호 · 공성진 · 이화수 · 강성천 · 김을동 · 김소남 · 박순자 · 황우여 · 이학재 · 조전혁 · 김성희 · 정희수 · 진영 · 김정훈 · 이철우 · 김무성 · 홍사덕 · 이운성 · 안형환 · 성윤환 · 임영호 · 이진삼 · 이주영 · 박대해 · 안효대 · 임동규 · 정해걸 · 조원진 · 원희목 · 정양석 · 허태열 · 서상기 · 배영식 · 최병국 · 박보환 · 주광덕 · 이영애 · 이정선 · 배은희 · 강명순 · 이한성 · 장윤석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15 정부 제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 발의)

(2011. 1. 14 정미경 · 강석호 · 공성진 · 이화수 · 강성천 · 김을동 · 김소남 · 박순자 · 심대평 · 황우여 · 이학재 · 조전혁 · 김성희 · 정희수 · 진영 · 김정훈 · 이철우 · 김무성 · 홍사덕 · 이운성 · 성윤환 · 안형환 · 원희목 · 정양석 · 허태열 · 서상기 · 배영식 · 최병국 · 박보환 · 주광덕 · 이영애 · 임영호 · 이진삼 · 이주영 · 박대해 · 임동규 · 안효대 · 정해걸 · 조원진 · 이정선 · 배은희 · 강명순 · 이한성 · 장윤석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0 신학용 · 김을동 · 양승조 · 홍사덕 · 이윤성 · 김성곤 · 조정식 · 홍영표 · 김상희 · 김진표 · 김효석 · 최영희 · 이찬열 · 김부겸 · 백원우 · 강창일 · 이윤석 · 황우여 · 장병완 · 정병국 ·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방위원장 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6 박근혜 · 권경석 · 김성조 · 김소남 · 김태원 · 원유철 · 이범래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 정수성 · 최인기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 발의)

(2008. 7. 3 홍재형 · 김유정 · 김동철 · 우제창 · 신낙균 · 김성순 · 김성곤 · 김희철 · 강성종 · 김종률 · 김충조 · 박선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08. 6. 27 정병국 · 임두성 · 이광재 · 김태원 · 강성천 · 김종률 · 임태희 · 김성희 · 구본철 · 이진삼 · 조전혁 · 신지호 · 이인기 · 임해규 · 손범규 · 황영철 · 양정례 · 김희철 · 배은희 · 백성운 · 박선영 · 정해걸 · 장광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6 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영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7 원유철 · 정진섭 · 정갑윤 · 나성린 · 차명진 · 배은희 · 이인기 · 김태원 · 고승덕 · 정의화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3 양승조 · 강창일 · 김정권 · 손숙미 · 노영민 · 이춘석 · 김우남 · 김춘진 · 김영진 · 신학용 · 오제세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5. 28 이명수 · 김낙성 · 김용구 · 고승덕 · 심대평 · 박상돈 · 임영호 · 김을동 · 이상민 · 원유철 · 이재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6 박근혜 · 권경석 · 김성조 · 김소남 · 김태원 · 원유철 · 이범래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 정수성 · 최인기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09. 5. 6 최인기 · 김영록 · 강기정 · 문학진 · 김효석 · 이미경 · 서갑원 · 김희철 · 김동철 · 김충조 · 김재균 · 최구식 · 이용삼 · 오제세 · 전현희 · 이명수 · 안상수 · 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8 김우남 · 안규백 · 강창일 · 이계진 · 김재윤 · 강기갑 · 안형환 · 신건 · 최규성 · 이사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4 이혜훈 · 강성천 · 박상은 · 손범규 · 권영세 · 유정현 · 김용태 · 조경태 · 이경재 · 현기환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0. 3. 26 조정식 · 박주선 · 조영택 · 최영희 · 전혜숙 · 박기춘 · 문학진 · 김상희 · 김진애 · 박은수 · 홍재형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10. 2. 11 최규식 · 최문순 · 우제창 · 김태원 · 전병헌 · 정동영 · 강기정 · 박은수 · 서갑원 · 장세환 · 김정훈 · 김동철 · 조영택 · 양승조 · 황우여 · 김영진 · 유성엽 · 이용경 · 박선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0. 7. 30 임영호 · 김낙성 · 신건 · 이재선 · 김용구 · 이명수 · 류근찬 · 이진삼 · 김창수 ·

권선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6. 18 김우남·우제창·유성엽·김재운·김성수·조경태·심대평·안형환·김영진·김효재·신상진·백재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 발의)

(2010. 8. 12 유정현·김성수·노철래·김소남·최규식·정옥임·박순자·김용구·정영희·박준선·정해걸·김성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박대해·임동규·김정권·안홍준·박준선·권선택·이정선·권영진·노철래·강성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10. 8. 4 최규식·이종걸·홍영표·박영선·이명수·조영택·김정권·유성엽·원혜영·장세환·강창일·최재성·김재운·박선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7 강창일·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최규성·김효석·이종걸·추미애·전혜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 박민식·김성태·남경필·박준선·신성범·원희룡·이낙연·이진복·이한성·전현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9 강창일·조영택·장세환·유성엽·최규성·추미애·조정식·이종걸·이윤석·문학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12 김태원·임동규·손범규·유성엽·이한성·최경희·이인기·윤상일·정수성·김충조·신지호·진영·안효대·고홍길·김정권·김소남·박대해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2. 7 이명수·류근찬·김창수·임영호·이은재·심대평·권선택·김충환·김용구·정의화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8 임동규·김성수·김우남·신영수·이용희·권경석·이정선·유정현·최경희·이종혁 의원 발의)

(이상 2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0 정부 제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정부 제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腦研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12 정부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1. 14 김세연·유기준·김선동·임해규·권영진·유정현·이종혁·장제원·황영철·김성태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7 김태원·나성린·이인기·김금래·박민식·구본철·안상수·홍일표·강석호·유성엽·현기환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1. 18 장제원·이화수·윤영·송훈석·안형환·김세연·김영우·조진형·김금래·김우남 의원 발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9. 1. 12 정부 제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박영아·허원제·박보환·김세연·권영진·전혜숙·김소남·서상기·안효대·유성엽·임해규·이군현·배은희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1 박민식 · 원희룡 · 박준선 · 이한성 · 김세연 · 정갑윤 · 현기환 · 전현희 · 유재중 · 박대해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8 김선동 · 김성태 · 한선교 · 이한성 · 유성엽 · 유정복 · 박준선 · 유기준 · 이종혁 · 배은희 · 주광덕 · 백성운 · 김충환 · 정해걸 · 강석호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9 변재일 · 양승조 · 강기정 · 조정식 · 전혜숙 · 김진애 · 안민석 · 김우남 · 박은수 · 김상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7 박보환 · 유승민 · 이해봉 · 유성엽 · 정영희 · 이한성 · 김태원 · 박영아 · 권경석 · 원희목 · 강석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30 조정식 · 박주선 · 조영택 · 최영희 · 전혜숙 · 박기춘 · 문학진 · 김상희 · 김진애 · 박은수 · 홍재형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1 김춘진 · 양승조 · 안민석 · 김영진 · 신낙균 · 이경재 · 정의화 · 김영록 · 박은수 · 김성곤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6. 24 김소남 · 홍정욱 · 안효대 · 이해봉 · 김충환 · 권경석 · 원희룡 · 유정현 · 손숙미 · 김성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7 권영진 · 권택기 · 황영철 · 윤석용 · 현기환 · 신성범 · 김성태 · 김세연 · 박민식 · 임해규 · 주광덕 ·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9. 8. 20 허원제 · 이종혁 · 정병국 · 원희목 · 한선교 · 김성태 · 유재중 · 현기환 · 박영아 · 성윤환 · 강승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9. 24 전혜숙 · 최문순 · 김춘진 · 장세환 · 김상희 · 양승조 · 박은수 · 노영민 · 김부겸 · 전병헌 · 송민순 · 안규백 · 서갑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8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3 서갑원 · 조정대 · 양승조 · 김부겸 · 박영선 · 우제창 · 강운태 · 백재현 · 전병헌 · 조영택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10. 4. 20 임동규 · 이종혁 · 김충조 · 현경병 · 정병국 · 이한성 · 권영진 · 남경필 · 김성태 · 이해봉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4. 9 송훈석 · 이윤석 · 이화수 · 박은수 · 이한성 · 황우여 · 이명수 · 정수성 · 정해걸 · 이인기 · 양승조 · 김영진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22 원혜영 · 이찬열 · 이춘석 · 김부겸 · 장윤석 · 전혜숙 · 조정식 · 문학진 · 추미애 · 김재윤 · 송민순 · 신낙균 의원 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이진삼 · 임영호 · 김창수 · 김충조 · 심대평 · 김낙성 · 류근찬 · 박상돈 · 이명수 · 김용구 · 권선택 · 변웅전 · 박선영 · 이상민 · 이재선 · 김옥이 · 서종표 · 정해걸 · 정병국 의원 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6 한선교 · 안효대 · 박종근 · 박대해 · 임동규 · 김옥이 · 강승규 · 김을동 · 홍사덕 · 신영수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2008. 8. 6 정해걸 · 김춘진 · 유기준 · 구본철 ·

양정례 · 박준선 · 김태원 · 이해봉 · 이윤석 · 이명규 · 이춘식 · 박기춘 · 신낙균 · 현기환 · 손범규 · 권영진 · 김성태 · 정영희 · 이화수 · 이성현 · 이해훈 · 배은희 · 임두성 · 정희수 · 유성엽 · 정하균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6 안효대 · 정갑윤 · 윤상현 · 이한성 · 임영호 · 신영수 · 강길부 · 양정례 · 김세연 · 이종혁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2 한선교 · 구본철 · 성윤환 · 조전혁 · 김을동 · 현기환 · 정병국 · 유기준 · 이명규 · 안형환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
(2009. 8. 3 김효재 · 강성천 · 정의화 · 김정권 · 윤영 · 이해봉 · 이경재 · 여상규 · 이범래 · 한선교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9. 8. 20 허원제 · 이종혁 · 정병국 · 원희복 · 한선교 · 김성태 · 유재중 · 현기환 · 박영아 · 성윤환 · 강승규 의원 발의)

(이상 1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7. 28 정부 제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30 정부 제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2. 7 이명수 · 류근찬 · 김창수 · 임영호 · 이은재 · 심대평 · 권선택 · 김충환 · 김용구 · 정의화 의원 발의)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1. 6 김효석 · 유선호 · 김우남 · 김영록 · 신낙균 · 김유정 · 김성곤 · 송훈석 · 오제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 정해결 · 김세연 · 이화수 · 안형환 · 이사철 · 손범규 · 주성영 · 유성엽 · 김소남 · 김효석 · 유재중 · 이정현 · 여상규 · 서상기 ·

이종구 · 강명순 · 임영호 · 정양석 · 강석호 · 한기호 · 정희수 · 홍준표 · 정범구 · 전해숙 · 황영철 · 이춘식 · 김기현 · 이성현 · 신상진 · 홍영표 · 유정현 · 김영우 · 안홍준 · 김성수 · 이한성 · 신성범 · 권영진 · 김호연 · 구상찬 · 정갑윤 · 김우남 · 이철우 · 박대해 · 장윤석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31 정부 제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9 정부 제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2009. 2. 16 조진래 · 김춘진 · 황영철 · 이한성 · 김성수 · 손범규 · 손숙미 · 이경재 · 유성엽 · 신성범 · 신학용 · 이인기 · 이화수 · 장제원 · 강석호 · 안상수 · 신상진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 발의)

(2010. 7. 20 정해결 · 정갑윤 · 정희수 · 강기갑 · 유성엽 · 김세연 · 안형환 · 이철우 · 이춘식 · 김우남 · 신영수 · 정범구 · 임동규 · 이성현 · 황영철 · 이화수 · 김소남 · 정영희 · 박준선 · 박순자 · 김성수 · 강석호 · 신성범 · 조진래 · 박대해 · 구상찬 · 원유철 의원 발의)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김효석 · 전현희 · 백재현 · 이낙연 · 김성곤 · 김영록 · 문학진 · 김우남 · 이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9 김성수 · 원유철 · 김영우 · 이화수 · 한선교 · 김성희 · 신상진 · 황진하 · 박준선 · 임해규 · 김학용 · 유정현 · 조진래 · 정해결 · 김선동 · 박보환 · 유정복 · 김태원 · 김소남 · 여상규 · 손범규 · 정갑윤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4. 20 김재윤 · 강기갑 · 김우남 · 박은수 · 송영길 · 안민석 · 양승조 · 오제세 · 우윤근 · 유성엽 · 유원일 · 이용섭 · 이찬열 · 이한성 · 정병국 · 조배숙 · 조승수 · 조영택 · 최문순 · 최영희 · 홍영표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23 유성엽 · 김성수 · 장윤석 · 안민석 ·

조배숙 · 신건 · 강기갑 · 강창일 ·곽정숙 · 김영진 의원 발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18 심대평 · 김창수 · 김정권 · 김정 · 이찬열 · 류근찬 · 이재선 · 김낙성 · 권선택 · 이명수 · 정영희 의원 발의)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9. 28 김성수 · 고승덕 · 이명수 · 이해봉 · 김정 · 김충환 · 이한성 · 박준선 · 변웅전 · 정미경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1. 6 김효석 · 유선호 · 김우남 · 김영록 · 김학용 · 신낙균 · 김유정 · 김성곤 · 송훈석 · 오제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 발의)

(2010. 9. 20 정해걸 · 김정 · 이한성 · 정희수 · 구상찬 · 노철래 · 유정현 · 송훈석 · 권경석 · 장윤석 · 김소남 · 유기준 · 이철우 · 강석호 · 이명수 · 신성범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0 안효대 · 임동규 · 박대해 · 손범규 · 박준선 · 이은재 · 장제원 · 김영우 · 김혜성 · 조해진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9. 3 정부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3 강기갑 · 곽정숙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 김낙성 · 김성곤 · 유원일 · 조승수 · 김영진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 안효대 · 김소남 · 유정현 · 임동규 · 강성천 · 조해진 · 손범규 · 신영수 · 조원진 ·

이진복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6 유선호 · 최규성 · 이윤석 · 이낙연 · 김재균 · 강창일 · 유성엽 · 주승용 · 김효석 · 김춘진 의원 발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 안효대 · 김소남 · 유정현 · 임동규 · 강성천 · 조해진 · 손범규 · 신영수 · 조원진 · 이진복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2. 15 최인기 · 김우남 · 김재윤 · 김성곤 · 박은수 · 이윤석 · 조영택 · 강봉균 · 유성엽 · 김효석 · 김춘진 · 이춘석 · 주승용 · 김영록 · 최규성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8 정부 제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김성수 · 김우남 · 정병국 · 이한성 · 이범래 · 유기준 · 홍영표 · 유성엽 · 이해봉 · 정해걸 · 이성현 · 임두성 · 유정현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 김우남 · 전해숙 · 박기춘 · 고승덕 · 백재현 · 최재성 · 전현희 · 신건 · 이종걸 · 이석현 · 백원우 · 장병완 · 박은수 · 주승용 · 김영록 · 김재윤 · 김효석 · 유성엽 의원 발의)

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2 유성엽 · 강운태 · 권영길 · 조윤선 · 성윤환 · 최규성 · 강기갑 · 이정희 · 곽정숙 · 양정래 · 안홍준 · 원희룡 · 이윤석 · 정하균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 9. 29 변웅전 · 원희목 · 김용구 · 이명수 · 양승조 · 이윤성 · 여상규 · 심대평 · 권경석 · 주승용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2010. 7. 23 조진래 · 서상기 · 홍영표 · 이성현 · 이정선 · 정해걸 · 황진하 · 김학송 · 신성범 ·

황영철 · 손숙미 · 장제원 · 강명순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우순 의원 대표발의)

(2011. 2. 22 박우순 · 박영선 · 박은수 · 김재윤 · 이춘석 · 조영택 · 백재현 · 최문순 · 한기호 · 최종원 · 문학진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 · 최재성 · 김효석 · 강창일 · 최영희 · 박은수 · 신건 · 백재현 · 최인기 · 조정식 · 유성엽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김효석 · 김진표 · 전현희 · 백재현 · 이석현 · 유성엽 · 정동영 · 강창일 · 조영택 · 전해숙 · 김성곤 · 김영록 · 안규백 · 문학진 · 김우남 · 이낙연 · 오제세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 김우남 · 김재윤 · 김효석 · 강창일 · 박은수 · 백재현 · 이종걸 · 조정식 · 최규성 · 이사철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3. 24 황영철 · 김정권 · 이한성 · 유기준 · 황우여 · 김소남 · 김성수 · 최경희 · 신성범 · 여상규 의원 발의)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3. 18 송훈석 · 이사철 · 김영진 · 이용경 · 최연희 · 이인기 · 김효석 · 최경희 · 이인제 · 김혜성 의원 발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30 정부 제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1. 2. 22 김영록 · 강기갑 · 김성곤 · 김성동 ·

김영진 · 김우남 · 김춘진 · 김효석 · 김희철 · 류근찬 · 박은수 · 안규백 · 유선호 · 유성엽 · 윤영 · 조정태 · 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2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2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10.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28 김정권 · 이한성 · 임해규 · 박우순 · 권영진 · 현기환 · 안효대 · 김태원 · 손숙미 · 서상기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1 윤상현 · 김선동 · 김성수 · 김태원 · 김학용 · 박민식 · 신학용 · 이학재 · 이한성 · 현경병 · 현기환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 발의)

(2011. 3. 23 조정태 · 박은수 · 김재윤 · 주승용 · 백원우 · 전현희 · 노영민 · 김진표 · 조정식 · 정범구 · 강창일 · 김재균 · 강기정 · 김우남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0. 10. 26 정부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1. 14 정부 제출)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아동빈곤법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강명순 · 강길부 · 강석호 · 강성천 · 강승규 · 강용석 · 고승덕 · 고흥길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택기 · 김금래 · 김동성 · 김무성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태 · 김성희 · 김세연 · 김소남 · 김영우 · 김용태 ·

김장수 · 김재경 · 김충환 · 김태원 · 김학용 · 김효재 · 나경원 · 나성린 · 박민식 · 박상은 · 박준선 · 배영식 · 백성운 · 서병수 · 서상기 · 손숙미 · 신상진 · 신성범 · 신영수 · 신지호 · 안형환 · 안홍준 · 안효대 · 여상규 · 원유철 · 유승민 · 유재중 · 유정복 · 유정현 · 윤석용 · 윤영 · 이경재 · 이두아 · 이명규 · 이명수 · 이범래 · 이사철 · 이성현 · 이은재 · 이정선 · 이종혁 · 이주영 · 이진복 · 이철우 · 이춘식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화수 · 임동규 · 임해규 · 장제원 · 전여옥 · 정두언 · 정옥임 · 정의화 · 정진석 · 정진섭 · 정태근 · 정해걸 · 정희수 · 조문환 · 조원진 · 조운선 · 조전혁 · 조진래 · 조해진 · 진성호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한선교 · 허원제 · 허천 · 현경병 · 현기환 · 홍사덕 · 홍일표 · 홍정욱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7. 8 노영민 · 김재균 · 김창수 · 최철국 · 주승용 · 이시중 · 이미경 · 이용삼 · 박선숙 · 김종률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3. 31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1 원혜영 · 전해숙 · 김재윤 · 조정식 · 이찬열 · 양승조 · 최철국 · 이춘석 · 홍희덕 · 최문순 · 김성순 · 안규백 · 추미애 · 변재일 · 김진애 · 김부겸 · 권선택 · 박지원 · 김상희 · 신낙균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6 홍희덕 · 강기갑 · 광정숙 · 권영길 · 김상희 · 김재윤 · 원혜영 · 유원일 · 이정희 · 최문순 · 추미애 · 홍영표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2009. 5. 22 권선택 · 노철래 · 심대평 · 배영식 · 임영호 · 조영택 · 박종희 · 이주영 · 김진표 · 이진삼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5. 7 정부 제출)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흥길 · 권영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7 조해진 · 원희룡 · 신영수 · 이미경 · 강성천 · 이사철 · 김금래 · 조원진 · 김학송 · 김영우 · 홍영표 · 정진섭 의원 발의)

6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6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5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011년 6월 20일 제출자 철회 요구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8 이종혁 · 이진복 · 홍준표 · 정옥임 · 허원제 · 김세연 · 박대해 · 김을동 · 서상기 · 김정훈 의원 발의)

6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3. 18 이종혁 · 유성엽 · 신상진 · 송민순 · 임동규 · 서상기 · 김영선 · 유기준 · 여상규 · 김을동 의원 발의)

6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011. 6. 8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법 6월국회 조속상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11. 6. 9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3-4 청구주택 A동 305호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박동선 외 2인으로부터 신학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

(2011. 6. 10 서울 도봉구 창4동 동도센터리움아파트 101동 1101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조준상으로부터 김재운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2011. 6. 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전라북도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남궁단 외 8인으로부터 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1. 6. 20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1. 6. 22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사법개혁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태훈 외 4인으로부터 천정배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6월 2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1. 6. 23 황우여·김진표·김낙성·노철래·권영길·이용경·조승수 의원 등 288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사할린 역방문 사업에 관한 질문서

(2011. 6. 8 이윤성 의원 제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질문서

(2011. 6. 10 김재운 의원 제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서

(2011. 6. 13 심재철 의원 제출)

방송법의 협찬 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에 관한 질문서

지상파 및 케이블 심의 기준 개선 관련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1. 6. 15 심재철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의정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질문서

(2011. 6. 7 이낙연 의원 제출)

6월 8일 제출 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정치자금법에 따른 금융거래자료 제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서

(2011. 6. 10 금융위원장 제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사할린 역방문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1. 6. 20 정부 제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2011. 6. 21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0년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결산서

(2011. 6. 10 정부 제출)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2010년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결산서

(2011. 6. 13 정부 제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

(2011. 6. 13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통지

국회의원 형사사건 확정판결 통지

2011. 6. 9 대법원으로부터 공성진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판결이 6월 9일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형사사건 확정판결 통지

2011. 6. 10 대법원으로부터 현경병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6월 10일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1. 6. 13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성진·현경병 의원이 궐원되었다고 대통령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함